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천하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6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1.

발 의 자 : 천하람 · 강준현 · 김교홍
김용태 · 김재섭 · 김종민
김주영 · 문진석 · 윤준병
이개호 · 이주영 · 이준석
전종덕 · 정성호 · 주호영
최기상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7조(근로조건을 명시)에 따르면,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채용 과정에서부터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는 없음.

이에 따라 대다수 구직자가 근로계약 직전에서만 임금·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게 되며, 이 중 상당수는 예상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에 근로계약을 포기하여 시간과 비용을 날리거나 ‘울며 겨자먹기’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임.

실제로 2024년 8월 기준 채용정보사이트 ‘사람인’에 게재된 채용광고를 분석한 결과, 연봉 정보를 ‘회사내규에 따름’, ‘면접 후 협상’ 등 불특정하게 기재한 경우가 60%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

지) 제3항에는 “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”고 명시했지만 위와 같이 급여 등 근로조건을 불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관련 제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상황임.

그 결과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<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>에 따르면, 청년 구직자의 63.8%가 ‘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’고 응답할 정도로 근로조건 등 구직자에게 필요한 채용정보가 부족한 실정임.

반면에 미국 콜로라도주·캘리포니아주·워싱턴주·뉴욕주 등 여러 주와 유럽연합(EU), 일본,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선진국에서는 채용광고에서부터 임금범위,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‘급여투명화법(Pay Transparency Law)’ 등을 시행하고 있음.

따라서 ‘한국판 급여투명화법’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6조의2 신설 등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채용광고 시 근로조건의 명시) 사용자는 채용광고를 하는 경우 임금범위, 근로시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제17조”를 “제16조의2 및 제17조”로 한다.

제116조제2항제2호 중 “제14조”를 “제14조, 제16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채용광고 시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19조(근로조건의 위반) ① <u>제17조</u>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② (생 략) 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(생 략) 2. <u>제14조</u>, 제39조, 제41조, 제42조, 제48조, 제66조, 제74조 제7항 · 제9항, 제76조의3제2항 · 제4항 · 제5항 · 제7항, 제	<u>제16조의2(채용광고 시 근로조건</u> <u>의 명시) 사용자는 채용광고를</u> <u>하는 경우 임금범위, 근로시간</u> <u>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</u> <u>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.</u> 제19조(근로조건의 위반) ① <u>제16</u> <u>조의2 및 제17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1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14조, 제16조의2</u>----- ----- ----- -----

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	----- -----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